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222 호        |
| 의결<br>연월일 | . . .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자   | 이양섭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23년 3월 3일 |

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(이양섭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22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년 3월 3일

발 의 자 : 이양섭, 박경숙, 김꽃임, 김국기  
이의영, 이종갑, 임병운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(안 제3조)
-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(안 제4조)
-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5조)
-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위탁 등(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3. 3.
- 협의 :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
- 비용추계 : 붙임

##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새로운 취업 기회 확대, 창업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중장년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기본방향
2.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황
3.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교육 등 지원 현황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지원사업 등) 도지사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
2. 중장년의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
3.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
4.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일자리 지원)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 
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 등)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 
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표창) 도지사는 중장년 취업 및 창업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 
표창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. 7. 1. 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,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

## 3. 관련 조문

-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
  - 제4조(지원사업 등) 도지사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    1.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
    2. 중장년의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
    3.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
    4.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
   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재정수반 요인 :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
  - 제5조(일자리 지원)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나. 추계결과

### ○ 산출과정(1년간)

-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: 558,880천원
-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(6개 사업)
  -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: 180,000천원
  - 중소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: 1,377,000천원
  - 중소기업 R&D 역량강화 지원 사업 : 887,600천원
  - 내일을 잇는 희망일터 지원단 : 165,880천원
  - 수출 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: 600,000천원
  -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지원 : 100,000천원
-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 : 330,000천원
-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특화사업 지원 : 40,000천원
-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: 20,000천원

○ 산출결과 :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21,296,800천원 소요

## 다. 재원조달방안

### ○ 자체사업(도비 100%)

-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(전환)
-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
-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특화사업 지원
-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

### ○ 보조사업(국비 50%, 도비 50%)

-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(6개 사업)
  -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
  - 중소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
  - 중소기업 R&D 역량강화 지원사업
  - 내일을 잇는 희망일터 지원단
  - 수출 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
  -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활용 지원

